

최근 세계통상환경은 WTO 뉴라운드 출범, EU의 일반특혜관세 개정, 전자제품 환경문제 등 중요한 변수가 산재해 있으며 여기에 9월 11일 미테러사태로 인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등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무역환경이 대두되고 있어 본회 국제통상팀에서는 지난 9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자산업 국제통상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에 본란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로펌인 Kaye Scholer사에 근무하면서 다년간 한국관련 통상케이스를 직접 담당해온 Mr. Michael P. House가 발표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였다. (편집자)

미국테러사태 이후의 미국의 통상정책과 하이닉스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Michael P. House (KAYE SHOLER LLP)

1. 미국 테러사태 이후의 미국의 통상정책

1. 단기 및 장기 영향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의 비극적인 테러사태의 여파로 부시 대통령은 주요 정책방향을 급선회하게 되었다.

국내 문제는 이제는 최소한 당분간은 우선 순위에서 멀어졌으며 국제문제가 우선 순위의 상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불행히도 국제문제 범주에 속한다. 미국 의회 역시 테러 공격과 그 여파에 전적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 사태의 결과로 미국의 통상정책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오랫동안 미국 우선순위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을 명확하다.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 결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를 살펴본다.

1. 비용/예산

최근의 테러공격으로 인한 구제 및 재건노력은 경기침체 여파로 예산을 축소하는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는데 의회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의회는 이미 뉴욕과 워싱턴 재앙지역의 구호와 재건에 400억\$을 통과시켰으나, 향후 몇 달 내에 군사 및 정보망 구축에 더 많은 돈의 소요가 불

가피하다.

미국 정부예산의 이러한 새로운 부담은 행정부가 그들의 통상 우선순위 정책의 가용예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의회 내에서 지출 우선순위 및 반테러 조치 기금의 확보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할 것이다.

몇몇 국가에 대한 관세특혜의 확대 등 예산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통상조치에 대한 조사는 강화될 것이다.

2. 의회와의 정치적 협력

현재 부시 대통령은 테러공격과 그 여파에 대한 공동의 관심으로 인해 의회에서 전례 없는 양당의 협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 하에서 통상문제를 포함한 여러 장기적 문제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간의 첨예한 대립이 유보되고 있다.

동시에 이 위기의 순간에 부시 대통령은 반테러 조치와 연관된 여러 강력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과 의회의 이러한 정치적 협력관계는 시간이 지나 논란 많은 문제로 복귀할 때 비로소 의견이 표출될 것이다.

3. 다자 관계

테러사태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나토 동맹국들의 갑작스런 공조의 필요성은 새로운 정치적 관계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통상분쟁의 해결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년에 미국과 EU의 통상분쟁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제는 반테러주의, 첩보 수집, 군사적 행동 등의 주제가 양자 협상의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 명백하다. 미국은 불량국가(rogue states) 및 테러 그룹들에 반대하여 협조적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의 강력한 지원과 공조를 모색할 것이 분

명하다.

최근 의회에서의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9월 11일 공격의 여파로 테러분자들을 지원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불량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들에 제재를 가하지 않은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논쟁이 번지고 있다.

의회와 행정부는 테러분자들을 지원하는 국가들과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이라크, 리비아, 이란, 수단 등과의 상업적 관계를 지닌 제 3국가들이 미국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다. 한국이나 EU와 같이 이러한 국가들과 상업적 관계를 가진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이들 불량국가와의 외국투자나 교역을 처벌하려는 의도의 미국 법이 더욱 강화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4. WTO

9월 11일 사태가 다자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WTO 활동에 미치기 시작했으며 향후 더욱 그러할 것이다. WTO는 9월 10일주에 예정되었던 중국의 가입 건에 대한 회의를 연기하였다.

또한 9월 12일부터 통상정책심의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에서 1년에 두 번 하기로 예정되었던 미국 통상정책의 심의를 무기 연기하였다. 이 회의는 WTO 사무국이 준비한 보고서와 미국 정부가 준비한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더욱 더 주목할 만 것은, 제네바의 통상관계자들이 11월 콰타르에서 예정된 WTO 각료회의를 미국이 테러공격의 원인이 중동지역에 있다고 판명하여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 다른 장소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각료회의의 연기를 의미하는데, 다른 국가 다른 도시에서 개최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 상하이 APEC 정상회담

중국 상하이에서 10월 21일 ~ 22일 개최된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담에 미국 부시 대통령은 9월 11일의 테러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참석하였다. 부시는 계획대로 APEC에 참석하고 북경을 방문하였다.

6. 미국 수출통제

의회는 몇몇 의원들은 이번 테러 공격이 미국의 수출통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미국 상원은 새롭고 원만한 수출규제법안(Export Administration Act bill)을 승인하였으나, 하원은 7월 하원위원회에서 통과된 훨씬 엄격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의회에서 새로운 수출통제법안이 나올 때까지, 수출통제는 대통령의 행정권한하에 유지된다.

II. 제조중인 미국의 통상규정 및 무역장벽

과거에는 상례처럼 여러 미국의 통상관련 규정 및 결정이 여러 형태로 WTO에서 교역당사국들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여기에서는 현재 제조중인 주요 규정 및 결정과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민간화된 기업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법

EU는 이전에 정부소유에서 현재 사기업이 된 외국생산자들의 수출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상계관세에 대해 각각 12건을 WTO에 제소했다.

과거 몇 년간 미국의 상계관세법 및 규정은 혜택을 민간화된 생산자에 “이전” 시킴으로써 정부소유의 기업이 받은 보조금 및 혜택을 다루었다.

최근 British Steel 케이스에서 미국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미국의 정책을 반복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WTO 패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까지 무효화된 방법론(methodology)을 적용하여 과거 몇 년간 결정된 많은 상계관세 케이스에서 법원과 WTO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EU는 이러한 무효화된 판정을 근거로 현재 발동중인 상계관세 명령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WTO 패널이 이러한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철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2. 미국의 일몰재심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의무조항에 따라 미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최초 내려진 후 5년 이내에 명령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철회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이 새로운 “일몰(sunset)” 조항이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법의 일부로써 미국법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EU의 일몰재심 조항과는 달리, 일몰재심에 대한 미국법과 관련기관의 정책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철회를 희망하는 당사자들에게 매우 큰 부담을 안긴다.

덤핑마진이나 보조금 비율의 경우, 사실상 미국 상무부(DOC)는 불가능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여 피제소자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철회 후 예상 덤핑마진이 제로(0)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상무부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명령이 발동중이지 않은 가장 최근의 상황을, 명령이 철회될 경우, 향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마진의 여부를 나타내주는 기준으로 고려한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명령이 발

동중이지 않은 가장 최근의 시기는 원심의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명령이 내려지기 직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 기간의 상황을 조사함으로써 상무부는 틀림없이 덤핑마진이나 보조금이 존재했다고 판정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즉, 상무부의 기준에 따라서는 피제조자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명령의 철회가 덤핑의 재발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WTO 패널은 미국의 일몰제심 규정에서 이 불가능한 기준을 제거하는 것을 판정해야 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핵심 준수사항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명령은 “지속적인(continued)” 덤핑이나 보조금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러한 명령이 필요하지 않는 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가용한 정보(Facts Available)” 및 “나머지 업체(All Others)” 덤핑율

최근의 일본산 열연강(hot-rolled steel)케이스에서, WTO 패널은 “나머지 업체”의 반덤핑율의 결정시 “가용한 정보”를 적용하는 미국의 오랜 방침을 무효화했다.

미국 당국은 많은 반덤핑 조사에서 소규모의 외국 생산자나 수출자들의 데이터를 요청치 않고 있다.(많은 케이스에서 상무부는 적극적 참여 요청을 한 소규모 기업들의 데이터를 고려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들 케이스에서 상무부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덤핑마진을 상무부가 조사한 대규모 생산자들의 실제 덤핑마진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대규모 생산자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가 대상업체의 비협조나 제출자료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상무부는 규정에 따라 비협조업체나 제출자료 검증불가 업체의 덤핑마진 계산에 “가용한 정보”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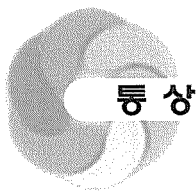
또 생산자의 제출 데이터중 일부만 검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상무부는 “부분적(partial)” 가용정보를 활용한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상무부가 사용한 “가용한 정보”는 외국 생산자에 불리한 정보이다. 그러므로 소규모 생산자들에 대한 “나머지 업체” 덤핑마진율의 산정에 적대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불공정한데, 소규모 생산자는 대규모 생산자의 협조 여부나 검증가능 자료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상무부는 “나머지 업체”의 덤핑율 산정으로부터 “가용한 정보 전부”에 “전적으로” 근거한 모든 덤핑마진을 배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코자 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나머지 업체”의 가중평균 덤핑율의 산정에 가용한 “부분적” 정보를 포함하는 덤핑마진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몇몇 케이스에서 가용한 “부분적” 정보를 포함하는 덤핑마진은 불리하게 높는데, 이는 검증 불가능한 데이터가 개별적 대규모 생산자의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열연강 케이스에서 WTO 항소기구는 상무부의 규정은 나머지 업체의 가중평균 덤핑율에 포함될 불리한 가용정보를 허용하기 때문에(즉, “부분적” 가용 정보가 개별 생산자에 사용될 때) WTO 반덤핑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WTO 판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관련법을 개정하여 가용한 정보에 (부분적일지라도) 근거하여 덤핑마진이 내려진 모든 생산자는 “나머지 업체”에 적용된 가중평균 덤핑마진에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미국 업체측 변호사들은 “나머지 업체” 방법론의 문제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비용이 별로 많지 않는데, 이는 일본이 미국의 불



이행으로 인해 자국 업체들이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한 WTO 판정을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항소기구 판정에 부합한 “나머지 업체” 덤핑율의 개정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전체 반덤핑관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실제 무역손실을 입증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기타 미국의 무역장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TO는 시장진입에 대한 미국의 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9월 11일 테러사태의 여파로 WTO가 이 보고서의 검토를 연기하였으나, 이 보고서는 이미 작성되어 있다. 아래는 WTO 보고서 내용의 간략한 소개이다.

- 해운 : 보고서에는 이 분야가 미국이 가장 보호하고 있는 분야로 파악하고 있다.
- 농업 보조금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농산물 분야는 정부지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1997년과 2000년 사이 거의 3배로 증가하여, 농산물 생산액의 감소를 초과한다.”
- 철강 수입품 : 보고서에는 외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의 급격한 증가가 지적되어 있다.
- 기타 분야 : 섬유, 의류, 수송 및 기타 서비스 등의 분야에 외국업체에 증대한 장벽이 아직도 남아 있다.

II. 하이닉스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작년말 이후 세계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대형

업체인 하이닉스반도체 문제는 미국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었으며, 다른 나라도 하이닉스가 한국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제금융(bailout)”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하이닉스” 이슈의 배경, “구제금융” 주장의 과장 여부, 현재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지원이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를 유도할 것인가 등을 다루어 본다.

1. 하이닉스의 재정적 어려움

한국의 여러 기업과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는 1997~1998 금융위기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한국 기업의 대외의 대부분은 3년짜리 채권의 발행을 통한 것이었는데 2001년 올해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약 65조원의 회사채가 2001년 만기도래 하는데 이 금액은 2000년말 현재 한국 경제의 전체 회사채 물량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하이닉스의 경우만 봐도 부채의 60% 이상이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

1997~1998 위기로 인한 재정적 여파 및 당시 발행한 비정상적인 단기 채권 등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는 2001년 상당 부분 충격의 여진을 겪고 있다. 장기회사채 발행 등 만기도래를 분산시켰더라면 현재의 뼈격거림을 예방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과 기타 많은 시장에서는 회사채의 만기가 10년, 15년, 25년 등 장기인 경우가 상식이다. 반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총회사채의 95% 이상이 4년 이하의 만기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행히도 하이닉스는 회사채 만기 부담과 반도체 시장 경기의 침체가 동시에 역사상 최악으로 다가온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2001년 세계 반도체시장이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작년 전반에 걸쳐 이미 가격하락과 수요침체를 경험했다.

특히 하이닉스의 주종 제품인 DRAM 반도체의 가격은 급락하였다. 최근 뉴욕과 워싱턴의 테러사태로 인해 경제 전반에 특히 반도체 매출에 추가적인 충격이 예상된다.

2. 산업은행의 회사채담보부증권 프로그램

여타 한국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는 2000년말 심각한 유동성문제에 직면했는데, 더 많은 부채가 2001년 만기로 도래한다.

한국 정부 소유의 한국산업은행(KDB)은 2000년말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이고 시장기반적인 조치 등을 포함하는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에 따라 산업은행은 고유의 기금으로(IMF 구제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회사채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및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을 매입하고 개인투자자, 은행 또는 투지신탁에 재판매하였다. 이러한 CBO와 CLO는 적격(eligible)기업에 만기도래하는 기업부채의 최대 80%를 차지했다. 동시에 산업은행은 즉각적으로 대부채의 70% 전체를(80% 중에서) 민간투자자들에게 재판매하여, 결과적으로 적격기업의 매입부채의 10%(즉, 기업 총부채의 겨우 8%)만 가지게 되었다. 이 제도는 2001년 말까지 1년 시행된다.

산업은행의 회사채신속인수제도에 적격한 기업은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은 장기적 전망이 밝고 경쟁력 있는 기업에만 적용됨으로 해서 “구제금융(bail-out)”이 되지 못했다. 적격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1) 높은 신용평가 (2) 만기도래 회사채의 20%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3) 적정한 현금 유동성을 나타내는 구조조정 계획 (4) 주요 채권은행과 산업은행 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승인 (5) 장기적 기업경쟁력의 증거 등을 보여 주어야만 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필요조건

에 불합격하였고, 이러한 기업들은 신용위험평가에 근거 청산이 명령되었다.

산업은행의 이러한 제도는 미국에서 논쟁과 비난을 야기했는데, 하이닉스의 주요 미국 경쟁사인 Micron Technology에 자극 받은 정부관리들은 “구제금융(bail-out)” 및 정부 “보조금” 주장을 제기했다.

미국의 WTO 대표부는 제네바에서 개최된 비공식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미국은 이 제도에 대한 공식적 항의는 제출하지 않았다. 워싱턴에서는 관리들이 이 제도의 시장기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게됨에 따라 비판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상계관세 제소 위협을 가한 Micron Technology는 결국 제소하지 않았다.

3. DRAM 시장 붕괴

산은의 회사채신속인수제도에 따라 하이닉스를 비롯한 300여개 기업들이 2000년말과 2001년초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에는 DRAM 시장이 바닥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조짐도 있었는데, 만약 그랬더라면 하이닉스의 회생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동시에 2001년 6월 하이닉스는 유럽에서 성공적인 로드쇼를 개최하여 12.5억\$의 해외주식 예탁증서(GDR)를 발행했다.

그러나 8월말 현재 DRAM 시장은 더 급격히 하락하고 하이닉스는 이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DRAM 가격은 전년대비 90% 하락하여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하이닉스의 주요 채권은행들은 하이닉스의 부도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 방안중 하나는 부채의 출자 전환 (debt-for-equity swap)인데 이는 현재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대규모로 희석시키는 것이다.

하이닉스에 대한 추가적 지원 보도는 미국과 기타국에서 새로운 우려를 야기했다. 2001년 8월 17일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의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아래의 경고문을 보냈다.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를 지원하기 위해 수년간 한국 당국이 취한 조치는 미국에 큰 우려를 안겨 준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진정한 구조조정 의지 및 WTO 의무에 의문을 던진다. 대입 채권의 비정상적인 결합, 신디케이트 대출, 수출대출한도의 상향, 만기부채의 연장(roll-over), 채권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정부출자 금융기관에서 하이닉스에 이미 40억\$ 이상을 연장해 주었다.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보나, 하이닉스는 시장의 힘(market forces)으로만은 이와 같이 엄청난 자본과 지원이 이끌어낼 회사가 아니다.

미상무장관 Donald L. Evans 이 2001년 8월 17일 산업자원부 장재식 장관에 보낸 편지

다른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또한 정부간여의 가능성에 의문을 던진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 정부는 은행이 직접 하이닉스의 부도처리 여부 또는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출자전환(주주들에게는 쓰레기가 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관대한 출자전환은 국가보조에 해당된다"라고 8월 27일자로 보도했다. 동시에 몇몇 금융기관, 한국의 투신사들 및 하이닉스의 경영진조차도 이 제안에 대한 유보를 표명했다(한국일보 8월 27일자).

4. 출자전환 : 효과가 있을까?

몇 주간의 회의에서 이견을 표출하고 2001년 9월 14일 하이닉스 주채권은행들은 오래 기다렸던 지원패키지의 1단계를 승인했다. 은행들은 3조원(23억\$)을 출자전환하여 하이닉스 지분이 50%

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채권단은 이자를 인하하고 2004년까지 기존 채권의 상환연장을 합의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각각 1조2천억원과 5,200억원의 상환연장을 요청 받은 투신사 및 리스회사의 지원 없이는 이행될 수 없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는 신규 자금 투입 가능성이다. 채권단들은 5,000억원의 신규대출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는데, 이는 하이닉스와 금융자문기관인 살로만스미스바니가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의 미테러사태 이후 이러한 결정의 타이밍이 불확실하다. 외환은행의 관계자는 신규대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 테러사태의 여파가 어떻게 반도체 시장에 미칠 것인가를 알고 싶다고 밝혔다(Dow Jones International News 2001. 9. 14일자)

하이닉스와 채권단간에 합의한 출자전환은 하이닉스 회생의 여정에 첫걸음일 뿐이다. 이는 또한 정부보조금 여부로 미국정부와 새로운 마찰을 야기할 첫걸음이기도 하다.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출자전환의 성과가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하이닉스는 현재의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

5. 하이닉스 금융지원

: WTO 보조금협정 위반인가?

하이닉스에 대한 신규대출과 더불어 최근의 출자전환은 미국과 한국의 다른 교역상대국이 WTO 보조금협정(ASCM) 위반이라고 비판받게 확실하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은 이미 한국정부에 하이닉스 문제와 신규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보조금협정의 어떤 원칙을 하이닉스 금융지원이 위반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WTO 보조금협정의 금지보조금은 크게 다음 3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지는데, (1) 혜택(benefit)이 정부로부터 부여(bestowed) 되었는가? (2) 전체 산업 및 기업에 “일반적으로 가용”했는가? (3) 수출을 조건으로 하는가?

A. 정부가 부여하였는가?

우선 살펴보아야 할 의문은 민간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정부가 어느 정도로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혜택”에 관여했는가의 문제이다. 이 증거는 외환은행과 한빛은행이 하이닉스의 주요 채권은행이라는 사실이다.

하이닉스의 제1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한국정부가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 분명 한국정부의 일부분이 아닌 독일의 Commerzbank가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이닉스에 대한 외환은행의 모든 조치는 한국정부의 조치가 아니고 최대주주가 독일은행인 민간기업의 자율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다. 외환은행의 정부 지분만으로는 정부영향력의 증거가 없을 경우 정부조치라고 입증하기엔 불충분하다.

이는 외환은행 관계자가 하이닉스에 대한 외환은행의 결정에 한국정부가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발표와 일치한다. 외환은행 부행장인 Manfred Drost는 지난 주 기자들에게 하이닉스 채권단의 하이닉스에 대한 의사결정에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밝혔다. “우리는 진짜로 투신사를 포함하는 채권단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의 이익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AFX Asia 2001. 9. 14일자에 밝혔다.

동시에 정부개입을 피하는 것은 하이닉스에 대한 신규대출 은행이 산업은행이 아니라 외환은행과 한빛은행이라는 점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외환은행이, 정부소유의 산업은행과 함께와 아니라, 외환은행, 한빛은행 및 기

타 민간은행들에 신규대출 참여를 제안한다고 보도했다(AFX Asia 2001. 9. 13). 신규대출에 산업은행이 참여치 않을 경우, 미국관리들이 하이닉스의 최근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명백한 개입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B. 이것이 혜택인가?

WTO 보조금협정(ASCM)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의 형태로 한 기업에 부여한 재정적 혜택이 없는 한 보조금이 될 수 없다. 정부의 대출 및 대출보증의 경우는 ASCM Article 14(b)와 14(c)는 수혜기업이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이나 정부의 대출보증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간에 차이가 없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문제는 하이닉스 신규대출 조건이 동일한 형태의 대출에 대한 상업적 규범에 벗어났는가 여부이다.

정부의 대출이나 대출보증은 그 자체가 보조금협정 위반은 아니다.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수혜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출조건에 차이 또는 특혜가 있어야 한다.

2000년말과 2001년의 산업은행의 회사채담보보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특혜의 의미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듯하다. 실제로 산업은행이 매입한 CBO에 대해 산업은행이 하이닉스에 부여한 이자율은 이 당시 시티은행 같은 다른 채권은행이 하이닉스에 부여한 이자율보다 높다.

최근에 발표된 출자전환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문이 제기된다. 출자전환의 세부 내역이 하이닉스에 특혜적인 것이 아니라 독립적 거래(arm's length), 상업적 조건에 근거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금지된 “혜택”이 부여되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동일한 방법이 향후 몇 개월간 하이닉스에 대한 신규대출 및 대출보증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C. 특정적인 것인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금협정 Article 2.1에 따르면, 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재정혜택을 받더라도 이 혜택이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산업 또는 기업이나 산업의 그룹에 특정적(specific)”이지 않는 한 조치가능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 위에서 논한 산업은행(KDB)의 회사채담보부증권(CBO) 프로그램의 경우, 이 프로그램이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모든 한국기업에 가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실제로, 2001 중반 현재 약 300개의 한국 기업이 KDB CBO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다.

물론 미국관리들은 하이닉스가 산업은행 기금의 불균형한 수혜자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이닉스는 新/舊 현대그룹 계열사 3개사와 함께 올해 8월까지 산업은행이 매입한 전체 채권의 63%를 받았다.

코리아타임스 2001. 9. 13일자. 하이닉스 혼자만으로도 전체 산은 기금의 37.9%인 6,980억원을 받아, 산은 기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었다.

Asia Pulse Pte Ltd, 2001. 9. 11일. 미국당국은 이러한 수치를 활용하여 산업은행의 기금은 전체 기업에 개방되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하이닉스에 혜택을 주려고 특정적으로 유도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D. 혜택이 수출을 조건으로 하는가?

금지보조금의 범주에 속하는 한 기준은 혜택 공여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출을 조건으로 하거나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가 이다. 보조금협정(ASCM) Article 34.1 참조.

산업은행(KDB)의 회사채담보부증권 (CBO) 프로그램이나 현재 논의중인 하이닉스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에 대해 미국당국이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가는 의문이다. KDB CBO 에는 수출이나 국내물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조항이 없다. 게다가 WTO 케이스는 한 기업의 수출이 수출 조건을 정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분명히 해준다. 그러나, 하이닉스가 한국의 대표적 수출 기업중 하나라는 사실이 미국당국이 한국에 대해 반보조금 제소를 할 경우 부각될 것이다.

